

[서울특별시]

# 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50-8654 / 전송 773-4161

문서번호 하행 58175-1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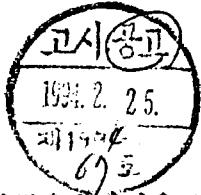
시행일자 94. 2. 25.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제목



취급		시 장
보존		
국 장	106	1994. 2. 25.
과 장	106	법무담당관 서사필
계 장	3-6	법제심사계장
기안	곽 창 현	협조

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공유수면 점용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상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등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입법예고안 : 별첨.

나. 입법예고기간 : 94. 3. 1. - 94. 3. 20. 까지(20 일간)

첨부 :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입법예고 1부. 끝.

(제2안)

수 신 공보담당관

제 목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재의뢰

1.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 공고안 : 별첨

첨부: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부. 끝.

하 수 행 정 과 장

107

2-1

105

102

(제3안)

수 신 수신처참조

계 목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1.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조례개정에 참고하고자 하니 공유수면점용료등을 납부하는 유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94. 3. 20. 까지 하수행정과장 참조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 의견이 없으면 별도의견 없는것으로 처리할것임.

가. 의견조회 사항 : 별첨

첨부: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



서 울 특 별 시 장

수신처 : 기획담당관, 서관(1-5), 서국(1-14), 서본부(1-4), 서구(I-22 전설관리과장)

한강관리사업소장(관리부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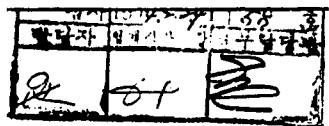
108

2-2

114

103

공 고 (안)

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4-61호

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

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4년 2월 일

서 울 특 별 시 광

1. 개정취지

공유수면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타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 토록 하기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

- 토지가격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

나.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부과기준 변경

- 현행 평포관경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

다.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

- 기준변경등으로 전년보다 10%이상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.

라. 점용료반환근거 조정

-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이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(허가취소등)을 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.

#### 마.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

- 현행 면적 및 기간계산에 있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㎡미만 면적 및 1월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함.
- 다만, 총 점용면적이 1㎡미만,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도록 하여 두분별한 점용행위를 규제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. 3. 20.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용지 세워서 작성)를 서울특별시장(참조: 하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750-8653-4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 및 그 이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.

110

2

116

105

